

對 이란 제재를 중심으로 한 전략물자관리제도의 최근동향



www.kosti.or.kr



전략물자관리원
정용진 연구원

kosti

Contents

I

이란제재 개요 및 동향

II

통제품목 상세(한국, 미국)

III

주의사항



I

이란제재 개요 및 동향



이란제재 개요

이란 핵개발의 역사

- 1967 : 미국-독일-프랑스의 지원 하에 전력생산 목적 핵개발
- 1980s : 이라크전으로 부쉐르 원전 파괴
- 1990s : 러시아-중국-파키스탄 협력하에 핵개발
- 2003 : 국제원자력기구(IAEA) 사찰결과 농축시설 및 중수생산 연구로 건설사실 확인
- 2005 :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 당선 후 개발 본격화
- 2006 : 나탄즈(Natanz) 우라늄 생산 농축시설 봉인제거
- 2010 : 나탄즈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작동
- 2011. 11 : IAEA 보고서에서 이란 핵개발 의혹 공식 재조명

* 나탄즈의 원심분리기 작동은 우라늄 농도를 20% 수준으로 농축 가능성 의미

** 전력생산 3.5% 농축우라늄 → 연구용 원자로 20% 농축우라늄
→ 핵무기 제조 90% 농축우라늄



이란제재 개요 – 해외[2010]



UN '10. 6 .9

UN안보리결의 1929호 : 전략물자 수출입통제, 금융제재, 자산동결, 화물검색 등 이란의 핵·미사일 확산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재수단 규정



미국 '10. 7 .1

포괄적이란제재법(CISADA) : 외국기업에 이란 에너지 분야 사업 참여 및 이란과의 금융거래 금지 등 의무를 부과(위반기업에게 미국 정부와의 조달계약 금지 및 금융거래 차단 등 제재를 가하여 외국기업 및 정부에 對이란 제재 동참을 직간접적으로 압박)



EU '10. 7 .26



일본 '10. 8 .3

美 CISADA 수준의 에너지, 무역 및 운송 분야 등에 대한 독자적 추가 제재 시행



이란제재 개요 – 한국(2010)



한국 '10. 9 .8

- 금융, 무역, 운송, 여행, 에너지 등 분야별로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한 독자적 제재조치를 발표('10.9.8)

* 제재요지 : 뮌헨은행 영업정지, 금융거래 사전허가 및 신고제, 여행, 운송 제한, 가이드라인 시행 (무역, 투자, 해외건설 및 대금결제) 등

- 정부조치(9.8) 이후 이란 거래 기업의 동결된 자금결제 지원을 위해 對 이란 교역, 투자 및 대금결제 업무절차 관련 「가이드라인」 시행

– 동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이란과 교역하는 모든 기업은 전략물자관리원이 발급한 「교역, 투자 非 금지확인서」를 제출해야 대금결제 가능

– 기업이 이란과 거래하는 품목 및 거래상대방 모두 가이드라인이 정한 對 이란 교역, 투자 금지대상이 아닌 경우 ‘非 금지확인서’를 발급

* 금지품목 : 전략물자, 자원개발 관련행위, 정유제품 생산, 수입 관련행위 등

* 우려거래자 : 유엔안보리 및 기획재정부 지정 243개 단체, 개인(안보리116, 기재부127)



통제대상

가이드라인

전략물자
(대외무역법 및 전략
물자수출입고시)

**대량살상무기 전용
우려 품목**

**석유자원개발 관련
품목**
(원유 가스의 탐사,
채취, 생산)

**정유제품생산 관련
품목**
(정유시설의 신설/현
대화, 정유제품 수출)

금융제재대상자
(외국환거래법, 국제평
화 및 안전유지 등의
의무이행을 위한 지급
및 영수 허가 지침)

+a

중계무역

**국제수출통제체제
부적격거래자**
(대외무역법, 지식경
제부 허가)



이란제재 개요 – 절차흐름도



이란제재 개요 – 원화결제



- 국내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통한 무역거래 대금지급 및 영수
- 원화표시 계약서 및 원화표시 신용장에 의한 거래가 원칙
- 모든결제는 원화로 이루어짐



이란제재 개요 – 원화결제



- ① Bank Keshavarzi
- ② Parsian Bank
- ③ Bank Eghtesad Novin
- ④ Karafarin Bank



- ⑤ Bank Maskan
- ⑥ Saman Bank Corporation
- ⑦ Bank Pasargad
- ⑧ Sarmaye Bank



행정명령 13590호('11. 11. 21)

석유화학분야 신규제재 도입 및 석유 가스 분야 제재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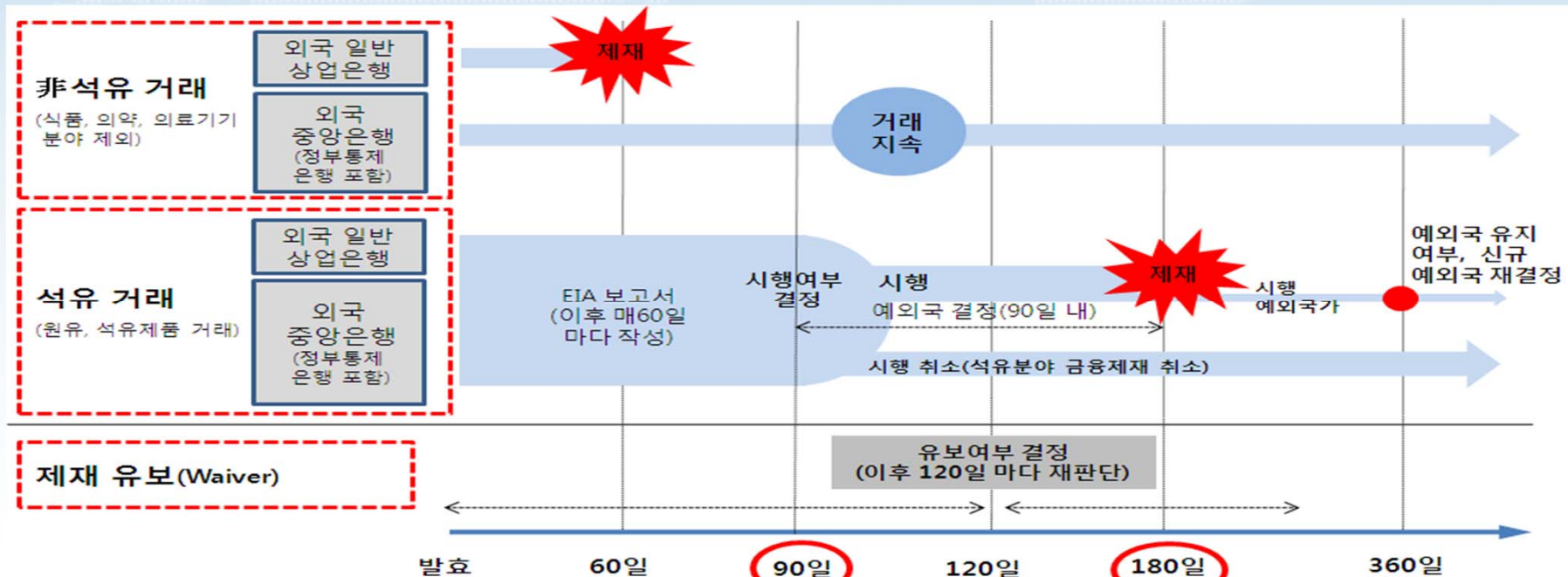
구분	CISADA	행정명령 13590호
석유자원 개발 분야	(건별) 2천만불이상 (합계) 5백만불이상 투자행위의 12 개월 합계가 2천만불 이상	(건별) 1백만불 이상 (합계) 12개월 합계가 5백만불 이 상
석유화학제품 생산분야	—	(건별) 25만불 이상 (합계) 12개월 합계가 1백만불 이 상
세부 제재 내용	외국 금융기관이 이란에 물품, 기술,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회사와 거래 시 그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일 때, 해당 금융기관을 제재 (미국내 외환시장 접근 금지, 은행거래 금지, 자산거래 금지 등)	



최근동향 - 미국

2012 국방수권법안('11. 12. 16)

- 외국 상업은행과 이란중앙은행간 非석유거래 제재(발효후 60일)
- 외국 중앙은행 및 정부소유 통제은행과 CBI간 非석유거래는 허용
- 외국 '모든' 은행과 이란중앙은행간 석유거래 제재(발효후 180일)
- 美 대통령은 서명(거부권 행사) 및 시행결정, 예외 및 유보 결정을 통해 동 법안의 발효.시행.적용 등에 권한을 행사 가능



최근동향 – 유럽 및 캐나다

- EU : 對이란 추가제재 조치에 동참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금융제재 대상 추가지정,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중단 조치
 - 이란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80개 개인·단체에 대한 자산동결, 이란중앙은행 및 공공기관들과의 귀금속 거래 중단
 - * '12.1.23 이란중앙은행, Tejarat은행, TME 등 14개 개인·단체의 금융자산 동결
 - ‘12.1.23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이란産 원유 도입 신규계약을 즉시 중단하고, 기존계약도 6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종결기로 합의
 - * EU는 중국(54만B/D)에 이어 제2위의 이란産 원유 수입국(45만B/D)
- 영국은 ‘11.11.21 이란금융제재령(Financial Restrictions Iran Order 2011)을 별도 발표
- 캐나다는 ‘11.11.22 특별경제조치법(Special Economic Measures (Iran) Regulations)을 개정하여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 발표



최근동향 – 아시아

- 일본도 이란의 핵 개발 관련 110개 개인.단체를 금융제재대상자로 추가 지정('11.12.9)
- 중국.러시아는 UN 차원이 아닌 미국의 독자 제재에 대한 협조는 어렵다는 입장이며, 인도도 이란産 원유 수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



對이란 추가제재 발표('11.12.16)

1. 이란의 핵 개발 등과 관련된 단체 99개 및 개인 6명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

* 금융제재대상자는 기제재 243 개인·단체 포함 총 348 개인·단체로 확대

2.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 및 석유화학 분야의 유지·확장 지원 관련, 국제사회의 對이란 추가제재 사실을 국내 기업들에게 알리고, 거래시 유의하도록 안내

3. 이란産 석유화학제품 구매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들이 거래시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예정



美 로버트 아인혼 국무조정관 한국 방문(1.16)

- 한국의 對이란 제재 강화 동참 요청
- 원유 감축 등 제재 요구

Tejarat 은행 등 금융거래불가('12.1.23)

- 미국이 '12.1.23 Tejarat 은행 및 Trade capital 은행을 금융제재대상으로 지정
- 제3국 금융기관이 동 은행과 금융거래시 美 금융시스템에서 배제
- **우리은행/기업은행을 통한 원화결제 불가**



Ⅱ

통제품목 상세(한국, 미국)



통제대상

가이드라인

전략물자
(대외무역법 및 전략
물자수출입고시)

**대량살상무기 전용
우려 품목**

**석유자원개발 관련
품목**
(원유 가스의 탐사,
채취, 생산)

**정유제품생산 관련
품목**
(정유시설의 신설/현
대화, 정유제품 수출)

금융제재대상자
(외국환거래법, 국제평
화 및 안전유지 등의
의무이행을 위한 지급
및 영수 허가 지침)

+a

중계무역

**국제수출통제체제
부적격거래자**
(대외무역법, 지식경제
부 허가)



통제대상 – WMD 관련 품목



전략물자

대량살상무기 관련 품목

품목 상세

- 대외무역법(전략물자수출입고시) 통제 품목 : 약 1,400개
- 주요통제품목(석유화학관련) : 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, 정밀 화학제품, 화공설비류

-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-2(상황허가 대상품목)
- WMD전용우려 품목(지침 별표)

계약일

무관

무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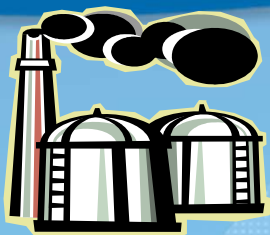
금액

무관

무관



통제대상 – 에너지 관련 품목



석유자원개발 품목

정유제품생산 관련 품목

품목
상세

- 석유, LNG의 탐사/시추/생산 관련 품목
- 저장탱크, 운반선, 파이프라인 등 이송 관련 품목

- 정유제품 : 가솔린, 디젤, 항공기 가솔린, 제트유

- 정유(Oil Refinery)시설의 신설/현대화 관련 설비류

계약일

‘10. 7. 1 이후

‘10. 7. 1 이후

금액

- 건당 미화 2천만불 이상
- 5백만불 이상 복수 계약행위의 12개월간 계약금액 합계가 2천만불 이상인 경우

- 건당 1백만불 이상
- 12개월 합계 5백만불 이상



통제대상 – 거래상대방



금융제재 대상자

Denial List 등재 업체

품목 상세

- 외국환거래법,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(348개)
- 기재부 또는 한국은행에서 확인 가능

- 국제수출통제체재 부적격거래자 등재 업체
- 전략물자관리시스템 (www.yestrade.go.kr) 에서 검색 가능

금융거래

불가능
※ 단, 10.7.8 이전 거래로서 금지대상이 아닌 경우 선별적 허가

지식경제부 상황허가 필요



사례 1

업체명 : “가” 엔지니어링

거래상대방 : ABC oil company

수출품목 : 천연가스 탈황설비 – South Pars Project

계약일 : '11. 1. 2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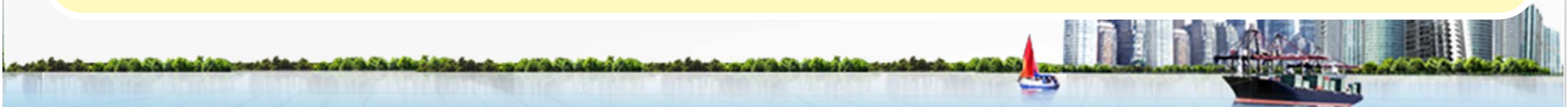
계약금액 : 650만불

계약이력



통제품목 여부 : **비해당**

(단건은 5백만불 이상이나, 12개월간 합계는 **1,650만불**)



사례 2

업체명 : “나” 엔지니어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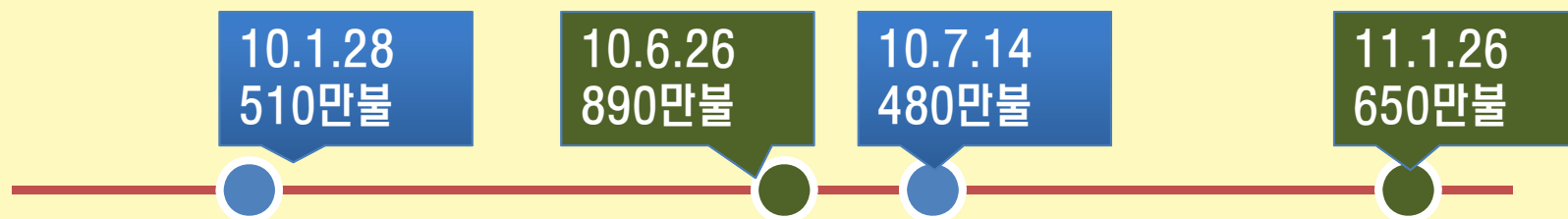
거래상대방 : ABC oil company, DEF gas company

수출품목 : 천연가스 탈황설비 (드럼, 열교환기, 세퍼레이터)

계약일 : '11. 1. 26

계약금액 : 650만불

계약이력



통제품목 여부 : **해당**

(합계는 업체별이 아닌 모든 이란거래상대방과 계약한 금액의 합계 : **2,050만불**)



사례 3

업체명 : “다” 엔지니어링

거래상대방 : ABC oil company, DEF oil company

수출품목 : 정유시설용 저장탱크 및 CDU

계약일 : '11. 1. 26

계약금액 : 69만불

계약이력

10.1.28
95만불

10.2.27
96만불

10.6.26
97만불

10.7.14
95만불

10.12.5
55만불

11.1.26
98만불

통제품목 여부 : **해당**

(최소 합계 기준 없이 모든 계약금액의 합계 – 정유제품생산 관련 : **536만불**)



사례 4

업체명 : “라” 석유화학

거래상대방 : ABC oil company, DEF Petrochemical

수출품목 : Benzene

계약일 : '11. 1. 26

계약금액 : 69만불

계약이력

10.1.28
95만불

10.2.27
96만불

10.6.26
97만불

10.7.14
95만불

10.12.5
55만불

11.1.26
98만불

통제품목 여부 : **비해당**

(통제품목 아님 - 정유제품 : 가솔린, 디젤, 항공기가솔린, 제트유)



사례 5

업체명 : “마” 석유화학

거래상대방 : DEF Petrochemical

수출품목 : 암모니아 플랜트 건설 및 운용 기술 이전

계약일 : '10. 1. 2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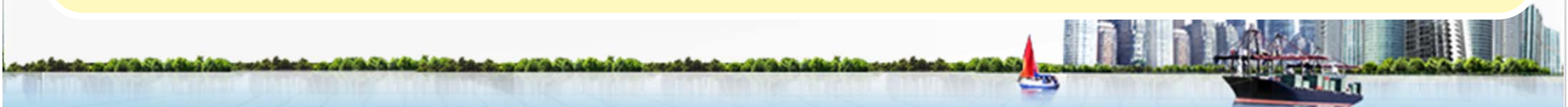
계약금액 : 350만불

계약이력

10.1.26
350만불

통제품목 여부 : **해당**

(전략물자 해당 – 1B227, 1E201 암모니아 합성 장치)



美 제재 – CISADA

- 국내 가이드라인과 유사(통제품목, 계약가액 및 계약일 기준)
- 에너지 관련 품목 제재(석유자원개발관련 품목, 정유제품관련 품목 제재)
 - ▷ DEVELOPMENT OF PETROLEUM RESOURCES
단건 2천만불 또는 복수 5백만불 이상 투자행위의 12개월간 계약금액 누계가 2천만불 이상인 경우
 - ▷ PRODUCTION OF REFINED PETROLEUM PRODUCTS
단건 1백만불 이상 또는 12개월 합계 5백만불 이상



美 제재 – CISADA

DEVELOPMENT : To “develop”, or the “development” of, petroleum resources means the **exploration** for, or the **extraction, refining, or transportation** by pipeline of, petroleum resources.

PETROLEUM RESOURCES : The term “petroleum resources” **includes** petroleum and natural gas resources.

REFINED PETROLEUM PRODUCTS.—The term ‘refined petroleum products’ **means** **diesel, gasoline, jet fuel** (including naphtha-type and kerosene-type jet fuel), and **aviation gasoline**.’.



美 제재 – 행정명령 13590호

– 석유자원개발 품목 통제기준 강화

기존 : 단건 2천만불이상 or 최소 5백만불 투자행위의 12개월 누계가 2천만불 이상인 경우

변경 : 단건 1백만불 이상 or 12개월 합계 5백만불 이상

– 석유화학품목 생산의 확대 유지에 기여하는 물품 제재 신설

기존 : 제재 없음

변경 : 단건 25만불 or 12개월 합계 1백만불 이상



美 제재 – 행정명령 13590호

Petrochemical products : the term "petrochemical products" **includes** any aromatic, olefin, and synthesis gas, and any of their derivatives, **including** ethylene, propylene, butadiene, benzene, toluene, xylene, ammonia, methanol, and urea.

- 통제범위가 포괄적으로 설정
- 美 측의 해석에 따라 모든 석유화학제품이 통제될 수 있는 위험

VS

- 제재의 취지(정유제품생산 공장으로서의 변환, 신규 석유화학프로젝트의 제한)
상 상기 열거된 품목(기초유분류)에 대한 제재로 해석



Contents



Ⅲ

주의사항



주의사항

사전 확인 필요

- 계약 전 금융거래가능여부를 확인서를 통해 확인 필요
- 실제 **금융거래 발생 전 확인서 필요 가능성**
 - 세관 통관
 - 물류업체 제출
 - 해상보험 가입 시 제출 등

DL 검색

-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우려거래자 검색을 통해 상황허가 필요성 확인
 - 상황허가 필요 시 **최장 15일 이상 확인서 처리기간 증가**

지속적인 동향 모니터링

- 국제 정세에 따라 제재범위 변동 예상 → 언론보도 및 전략물자관리원 공지 사항 주기적 확인 필요



주의사항

對 이란 LC 개설

- 미국 국방수권법 규정에 의하면, 기업. 우리은행이 원화결제 은행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국방수권법 발효일('11.12.31) 이후 60일 즉 **2월말부터는 對이란 무역대금 결제가 사실상 불가능**
- 확정된 사항은 없으나, 일람불(at sight)이 아닌 기한부 신용장(Usance L/C)의 경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**가급적 2월말까지 자금회수가 가능한 거래를 유지**

美 행정명령 제재대상 품목 거래자제

- 정부가 「이란교역 가이드라인」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우리 기업이 **美 행정명령 13590호를 위반하는 경우 美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** 미측이 신설. 강화한 품목의 **對이란 거래 자제 필요**



THANK YOU



kosti